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37@naver.com

담당 : 박용복 국장

문서번호 시험 2021 - 86호

시행일자 2021. 3. 5.

수 신 한국도로공사 사장

참 조 건설처장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수	번호		재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 목 「고속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잠정)」 수정 검토 요청

1. 국가 건설과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사에서 공고한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제5공구 정기안전점검」을 발주하면서 「고속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잠정)」 제10조2항2호, 제10조4항의 “명부 이외의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8항5호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관련법령 1부.
(2) 해당 공고문 1부.
(3) 해당 지정기준 1부.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첨 부 : (1) 관련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타법개정]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부칙 <제31438호, 2021. 2. 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으로 한다.

별표 5 설계·사업관리의 설계등용역의 수로조사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수로조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6호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 등록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첨 부 : (1) 관련법령(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0. 1.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2020. 1.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6

제3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1절 건설공사 안전점검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①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3. 정밀안전점검
4. 초기점검
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②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사규모 및 종류별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 등을 차등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④ 모집공고에 응하려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공고에 응하여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관리하고, 이를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는 제6항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지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접수기간·수행기관 지정방법·사업내역·제출서류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3.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
4.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 착공예정일
5.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
6.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 ⑨ 발주자는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실적·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및 가격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술인의 실적·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업무중첩도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하며,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을 생략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⑩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⑪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⑫ 발주자는 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⑬ 제11항 규정에 의한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 ⑭ 시공자는 제1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 ⑮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규정한 업무내용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가 정할 수 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5공구)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지정공고에 부하는 사항

공 고 명	점 검 비 용 (VAT포함)	비 고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제5공구 정기안전점검	399,520,000원	

※ 세부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은 [붙임②] 참조

2. 시행기관 : 한국도로공사 세종안성건설사업단

3.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지문인식전자입찰, 적격심사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1. 02. 24. 17:00 ~ 2021. 03. 03.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 03. 03.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23조에 따라 등록한토목분야(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특급기술인이며(토목직무분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한국도로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붙임①]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 부 : (3) 해당 지정기준(해당부분)

제10조(추가공고 및 재공고) ① 공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 결과 참여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수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1배수에 미달할 경우 추가공고를 시행한다. 단, 추가공고는 1회에 한하며 시행하며 추가공고에도 불구하고 2배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공고까지 모집한 안전점검 수행기관만으로 명부를 작성한다.

② 공사는 지정공고에 참여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를 시행한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재공고 결과 참여자가 1인일 경우 그 1인을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재공고 결과 참여자가 없을 경우 제5조제2항의 명부 이외의 수행기관 중에서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명부에 우선 등재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유자격자는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견적 및 수의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④ 공사는 제9조제3항에 따라 마지막 후순위자까지 심사를 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명부 이외의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재공고를 시행하며, 재공고 결과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및 제3항을 따른다.